

## 남양주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흉에 관한 조례안 [정현미 의원 대표발의]

# 검토보고서

2024. 4. 12.

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

## 남양주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향에 관한 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정현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## 2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, 남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- 다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(안 제6조)
- 라. 이스포츠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포상을 규정(안 제7조~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문화예술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4. 5. ~ 4. 10. (6일간) / 해당없음

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,

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7개가 선정되는 등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■ 참고자료 1 :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- 전국 지방자치단체 : 52곳 조례 제정 (광역 16곳 + 기초 36곳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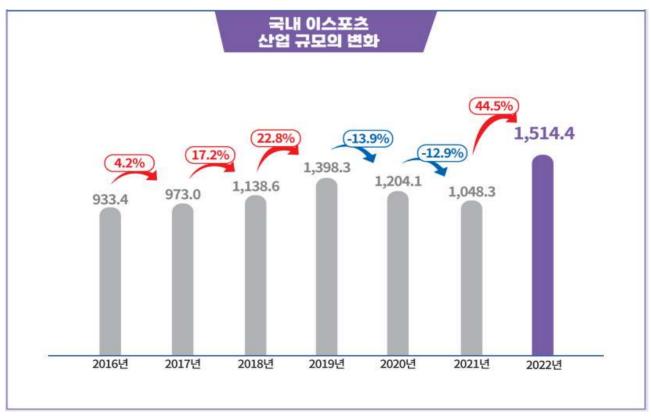
[표1]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제정 현황 (경기도 1곳, 시군 10곳) (24. 3. 기준)

순번	지자체	조 례 명	제·개정일자	규정 내용	
				계획수립	위원회 설치
1	경기도	경기도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및 지원 조례	2019. 11. 12.	$\bigcirc$	×
2	광명시	광명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	2021. 12. 23.	×	0
3	광주시	광주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	2023. 09. 27.	×	0
4	성남시	성남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	2019. 11. 25.	0	0
5	안성시	안성시 이 <u>스포츠(전자스포츠</u> ) 진흥 조례	2023. 04. 14.	×	×
6	안양시	안양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	2023. 12. 29.	0	0
7	양주시	양주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	2024. 02. 26.	0	×
8	오산시	오산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	2022. 12. 22.	×	0
9	의왕시	의왕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	2023. 09. 27.	0	0
10	의정부시	의정부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및 지원 조례	2022. 12. 29.	0	×
11	이천시	이천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및 지원 조례	2023. 12. 22.	0	×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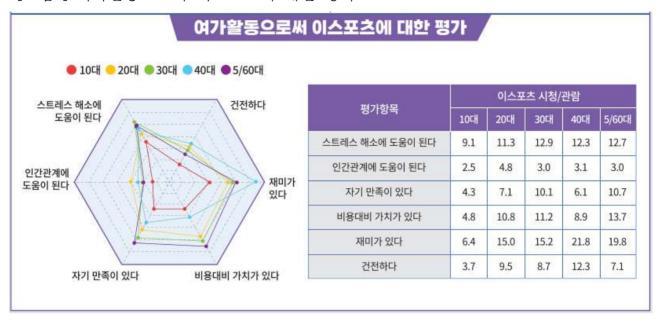
### ■ 참고자료 2 : 2023 이스포츠 실태조사 (한국콘텐츠진흥원)

[그림1]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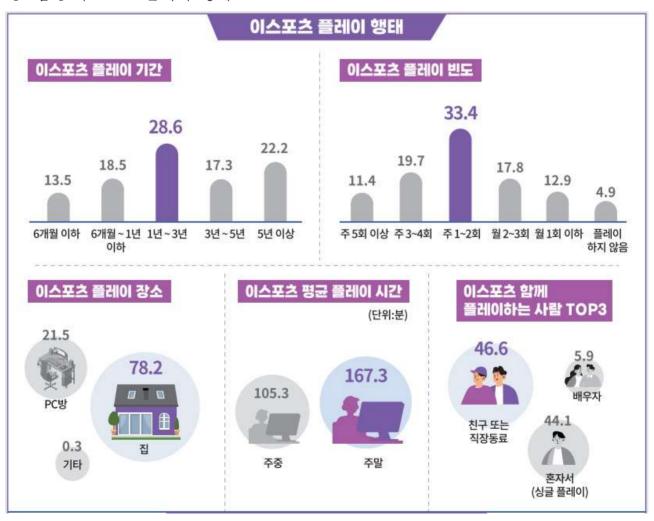
(단위 : 억)



[그림2] 여가활동으로써 이스포츠에 대한 평가



[그림3] 이스포츠 플레이 행태



## 붙임1

## 관계법령

#### ☑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이스포츠"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 (媒介)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.
- 2. "전문 이스포츠"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.
- 3. "생활 이스포츠"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.
- 4. "이스포츠산업"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5. "이스포츠시설"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,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
- 6. "이스포츠 선수"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7. "이스포츠 단체"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방 이스포츠의 진흥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,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·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·장기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·연도별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

- 2.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- 3.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
- 4.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. 국제 협력 및 교류
- 5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(財源) 확보
- 6.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
- 7.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
- 8.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
- 9.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소, 대학,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자금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, 이스포츠 단체,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. 이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
  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
  -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☑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·장기 진흥 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  -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"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
  - 2.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

## 불임2 예산조치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6조(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)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
  - 2.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
  - 3. 이스포츠 저변 확대 · 활성화 지원
  - 4.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
  - 5. 이스포츠의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
  - 6.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
 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현재 이스포츠진흥계획 수립 이전 단계이며, 이스포츠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화 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가 곤란한 사항임

## 4. 작성자

○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강호진